

- (⑨) 복합물류터미널 조성이 기 완료되어 장기간 감면 실적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감면 종료
- (⑩) 물류사업 서비스 개선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
- (⑪)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은 읍·면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한 보편적 행정서비스 제공 지원하는 점 등 고려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